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정하지 않은 수익계약 대상을 삭제하고,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 중 “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”를 “설치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